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금년부터는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자동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함.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1955년부터 운용해 온 제도로써 그동안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장부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근거과세와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업종별로 동일한 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음,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나?
- 가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구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개별사업자의 사업 실적 반영 여부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무기장사업자는 지출액이 반영됨
지출경비 입증 책임 유무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비용 인정
장부기장에 미치는 효과	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경향 발생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예)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총수입금액에서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뜻임

■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

- 단순경비율이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두는 이유
-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제도를 적용함.
-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임.

장부없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2003년 5월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6년귀속	2008년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95,000만원 미만	9,000만원 미만	7,2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세 부담도 전년과 거의 같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정도에 따라 세 부담이 차이가 나게 됨.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 ⇒ 세 부담 늘어남이 없음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음.
  -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둬.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업**

**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하여야 함으로
  -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 특히,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공제하는 방안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